

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

원활한 교통소통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을 시행함에 있어,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.

2024. 09. 02.

구 리 시



1. 취지 및 목적 :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(단속실시)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
2. 관련근거
 - 가. 도로교통법 제32조
 - 나.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3. 행정예고 기간 : 2024. 09. 02. ~ 09. 22. (21일간)
4. 행정예고 내용
 - 가. 내 용 :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(단속실시)
 - 나. 시행기관 : 경기도 구리시
 - 다.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
 - e편한세상 인창어반포레(103, 104동 주변) 도로 앞 288m, 맞은편 정지선부터 56m, 우측 구리역 방향 도로 230m
 - ※ 세부장소 [붙임1] 참조
 - 라. 불법주정차 단속개시 : 2024. 09. 23.(월)
 - 마. 공고기간 : 2024. 09. 02. ~ 09. 22.(21일간)
 - 바. 공고방법 : 구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guri.go.kr>)

5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(붙임 2)를 구리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간 : 2024. 09. 02. ~ 09. 22. (21일간)

나. 제출처 : 구리시청 별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(구리시 아차산로 439)

다. 제출방법 : 직접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031-550-2098)

라. 의견서 기재사항

- 의견제출자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[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(단속실시)에 대한 의견]

마. 기타사항 :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※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교통행정과(031-550-276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위치도 1부.
2. 의견제출서 1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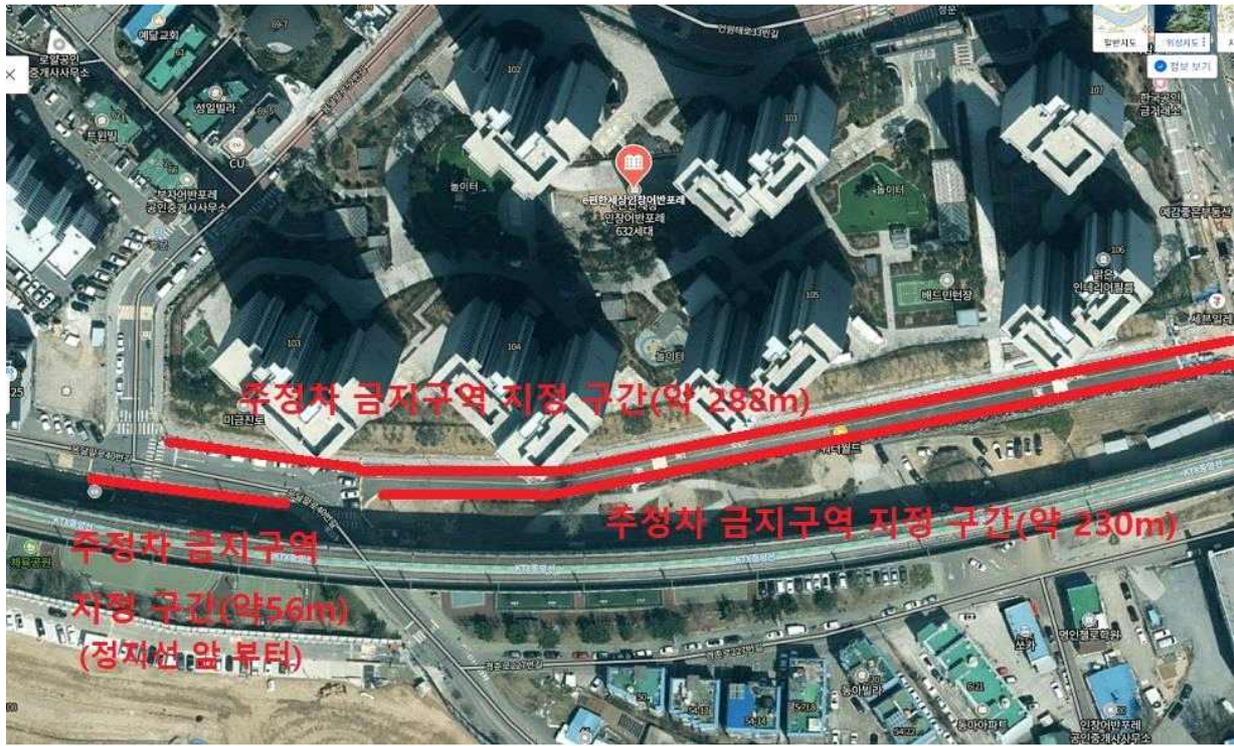
【붙임 1】

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(단속실시) 장소

| 연번 | 구역 및 단속 구간 | 비고 |
|----|--|----|
| 1 | e편한세상 인창어반포레(103, 104동 주변) 도로 앞 288미터, 맞은편 정지선부터 56미터, 우측 구리역 방향 도로 230미터 | 지정 |

- 주정차금지구역 신규지정 위치도 -

| | |
|----------|--|
| 주정차금지 구역 |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(103, 104동 주변) 도로 앞 288m, 맞은편 정지선부터 56m, 우측 구리역 방향 도로 230m |
|----------|--|



불법주정차 단속 현장 위치



【붙임 2】

| 의견제출서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
| 사업명 |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(단속실시)에 따른 행정예고 | | |
| 의견제출자 | 성명 (개인/단체) | | |
| | 주소 | 전화번호 | |
| 검토의견 (의견제출내용) | | | |
| | | | |
|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(단속실시)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| | | |
| 2024년 월 일 | | | |
| 제출자 | | (서명 또는 인) | |
| 구리시장 귀하 | | | |